Online Series

CO 08-21

북-러 두만강 국경선 재설정 협의와 북방영토 문제

이 규 창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일본은 연례행사처럼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미국 국무부는 원상회복하기는 하였지만 독도를 한때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독도를 향하고 있을 때 백두산과 두만강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백두산과 두만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련하여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 국경선의 재획정 협상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구소련 시절인 1985년 국경조약을 체결하고 1990년 국경설정의정서에 서명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경 공동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1990년 두만강에 세워놓았던 국경표지 유지 실태와 지형 변경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실사 결과 최근 10년간 두만강의 범람으로 수로가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수로 변경에 따라 양국은 국경선 변경을 도입하는 새 조약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조약안대로 하면 독도 면적의 약 160배에 이르는 지역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다. 8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에 대한 압력, 나진 개발사업에의 러시아 자본 유입 목적 등으로 북한이 이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2008년 8월 7일자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참조). 이 지역이 북한에 양도되면 녹둔도(鹿屯島) 양도에 이어 또 한 차례 우리 영토가 러시아에 양도되는 것이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있던 섬으로 우리 영토이었으나 1990년 북한이 러시아에 양도하였다. 두만강 상류의 토사가 이 지역에 퇴적되어 현재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한편, 남한과 북한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백두산관광에 합의하고 2008년 5월 백두산관광 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백두산관광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 틈을 타 중국은 집요할 정도로 창바이산(長白山)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지린(吉林)성 성장이었던 왕민(王民)은 백두산 관할을 연변 조선족자치주로부터 성 직속의 창바이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로 옮겼다. 그리고 백두산 지역의 한자·한글 병용 간판을 떼고 한자와 영문 간판으로 바꿨다(2008년 5월 15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들이 창바이산 공정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8월 1일과 2일 이틀간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 1998년에 이어 10년 만에 천지와 창바이폭포를 방문하였다. 8월 3일에는 중국 최초의 삼림관광공항인 창바이산공항이 정식 개통되었는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방공항 개막식에 이례적으로 중국 국가서열 5위인 리창춘(李長春)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공항 개항식에 직접 참석하였다(KBS뉴스 2008년 8월 5일자 참조). 중국이 올림픽 개막에 맞추어 창바이산공항을 개항하고 거물급 고위인사들이 창바이산 공정에 직접 나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하여 백두산을 '백두산'이 아닌 '창바이산'으로 전세계에 선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세대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녹둔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흐르면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체결한 국경조약이나 국경체제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통일 이후에 통일한국과 재협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달리 국경과 관련하여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체결한 조약은 국제법상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이다. 1978년에 채택된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는 국가승계는 조약에 의해 설정된 국경이나 국경체제와 관련하여 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위 규정은 국제관습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러 간의 두만강 국경선 재획정 문제와 중국의 창바이산공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차제에 독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문제 전반에 대하여 새롭게 문제의식을 갖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간도문제만 해도 그렇다. 내년이면 간도협약 체결 100년이 된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논증하는 국제법적 논거를 꾸준히 제시하여 왔지만 우리 정부당국은 그동안 간도를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일본은 학생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본 국민 70%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간도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지 되묻고 싶다. 시효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상 시효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도협약 체결로부터 100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만큼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련 지역에 대한 국제법상 주권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고 영토주권의 응고화(consolidaton)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토는 침묵하는 자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한 어느 노학자의 이야기가 귓전을 맴돈다.